# 경영이양직접지<del>불금</del>

세부사업명	<b>경영이양직불</b> 세목 민간경상보									
내역사업명	경영이양직불금 예산 (백만원)									
사업목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									
사업 주요내용		65~74세 농업인이 전업.후계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산물의 생	산자를	위한 직접	접지불제도 서	니행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65세~74세 선정신청일 사고로 농업 업경영을 한	직전 1 경영을 농업인	0년 이상 하지 못 <sup>6</sup> 포함)	하였다고 인정	정되는 경	우 최근 10				
지원한도	매도 330만원	련/na/년	., 임내 25	50만원/na/년	<u>1</u> , 4na까^	시원				
<b>재원구성</b>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구 분 합 계 국 고	54	16년 ,686 ,686	2017년 50,960 50,960		2018년 46,461 46,461		(단위: 백만원) 2019년 43,978 43,978		
담	당기관		담당	방과	담당	담당자 연락치		<b>박</b> 처		
	:림축산식품부 :국농어촌공사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지여신부			044-201-1 061-338-5			
신청시기	연중				<b>사업시행기관</b>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Agrix 시스턴	 								

## I 주요내용

#### 1. 신청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45년 1월 1일~ 195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

#### <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업인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이 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여 약정이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영이양"의 개념>

- 경영이양 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사용대차 제외) 또는 임대위탁 하는 것을 말함
- 한국농어촌공사
-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 \* 전업농업인등 :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등 포함),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 (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 2. 지급대상 농지

-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농어촌정비법」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 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 한국농어촌공사는 위의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년생식물 재배 등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에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상속·증여·환매받은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유의 판단 기준> —

- 상속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상속인(경영이양 신청인) 소유기간을 합산
-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증여자의 소유기간과 피증여자(경영이양 신청인)의 소유기간을 합산
-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 농업인(경영이양 신청인)이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기간과 환매받은 후 소유한 기간을 합산

#### 3. 보조금 지급요건

-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 <경영이양 후에도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3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
- 해당 농지의 위치·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여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속 경작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 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 ·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 4. 지원단가 및 지급액 산정

- 지급단가: (매도) 제곱미터당 330원/연, (임대) 제곱미터당 250원/연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 5.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 등

- 지급상한 면적 : 4만 제곱미터(매도 및 임대이양 면적을 합산)
- 지급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
  - ※ 경영이양자(약정체결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농어촌공사에 신고하고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15일 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6.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 및 절차

- 농어촌공사는 약정기간 중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영 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 약정기간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과 영농은퇴 기간을 포함한다
  - 약정의 상대방(농업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환수금액 = 기지급한 보조금 총액 + 가산금\*

\* 가산금 = 월별 기지급한 보조금 × 변환일까지의 일수 365일 × 10%

- 약정을 해지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을 화수

#### << 세부환수절차 >>

- 농어촌공사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약정해지(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농어촌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 Ⅱ / 사업추진체계

## 1. 세부계획 수립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검토·승인

####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2019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시·군 또는 자치구별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 등

### 2. 사업신청단계

####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사업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연중)
-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받은 농어촌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격과 대상농지 여부를 확인
  - 농업인이 확인을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제출토록 안내
    - ※ 신청서식(별지 제1호)의 뒤쪽 참조
- 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의 홈페이지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농어촌공사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 농 업 인

-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농어촌공사에 제출
- 신청시기 : 2019년도에 경영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1부(64세 이하 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 3.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공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 결과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통보
  - \*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제외사유를 통보(업무형편에 따라 유선 통보 가능)
  - 신청서류 :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 및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요건 적합여부 검토
  - 현지조사 : 신청인이 신청농지의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지 여부,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연령 등 기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현지조사서" 작성 비치
- 농어촌공사는 지급요건 등에 적합한 신청자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표시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 영농은퇴 기간(약정자가 8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기간)
  -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4. 이행점검 시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관리(반기 1회)

####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적정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이양자의 약정내용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보조금의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함 다만,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영농은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및 약정의무를 이행(6개월 이내)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을 해제해야함
  - 약정의 상대방(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 밖에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해지 또는 해제여부 판정

- 경영이양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 변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로 보되, 고의성 등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 ※ 제재부가금의 부과

- 관 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제1항
-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 반환하여야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 [별표 3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 반 행 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다. 법 제33조의2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수령자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농어촌공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여 경영이양하고자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경지정리, 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거나 약정기간 이상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 5. 자금배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매월 15일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농어촌공사가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정보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농어촌공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보조금 수령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 농지지번, 지급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의 홈페이지에 경영이 양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어촌공사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 Ⅲ / 평가 및 환류

## 1. 성과 측정

-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분석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2020년 1월말까지 제출
- 농어촌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2019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2. 사업평가 및 환류

#### 가. 사업평가

○ 농어촌공사는 2019년 사업평가결과를 2020년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나. 환류

○ 농림축산식식품부는 사업평가결과를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및 중기재정 운영계획 수립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수요는 전산자료상의 65세~74세 농업인의 소유농지 현황 및 최근년도 경영이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 추정

###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의 연령이 2019년에 65세 이상 74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안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	수일					처리기	기간 6	0일	( 앞쪽)
	농업경영	체 등록	록번호								
اجاجا	성 명			생년뒱	일일						
신청인	주 소							전화변	H 호		
	전자우편							휴대전	전화		
====== 구 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농업 진흥	소유자	경작	경영 이양	비고
	시 • 군	읍•면	리・동	-	지목	( m²)	지역		구분	방법	
지급신청											
농 지											
		지급신청	농지 면?	 적 계							
잔여소유											
농 지											
		자서 스 O	누지 매경	저게							
		산어소규	농지 면?	의 계							
임차경영 농 지											
0 1											
		임차경영	농지 면격	적 계							
	물의 생산지 같이 경영(									행규칙	제7조에
	E41 00	710 -	- D ME	99101	11 0			COH-	년	<u>.</u> 월	일
					신청인						또는 인)
한국농0	H촌공사시	장	귀ㅎ	ት							
첨부서류	뒤쪽 참결	Σ									수수료 없 음
									210 × 20	ᄁᇭᆙᄖᅥ사ᄁ	TL 00~/ 21

신청인	1. 농지원부 등본 1부							
첨부서류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행정정보						
담당 직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공동이용시스템						
확인사항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증명서	0 10 0 0 1 1 - 1						
제출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 및						
근거 법조문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	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경영이양보조금 담당 직원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 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 •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웤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1.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로 표시합니다.
-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 "경영이양 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소유농지인 경우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 공사임대위탁 나. 임차농지인 경우 경작권종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포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지 소재 지	지번	지 공 부		목 실 제	면적 ( m²)	농업진 흥지역 여부	경영이양 방법			
지급대 농	상 지											
지급약정 체 결		약정체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장 소		한국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							
	준비할 사항		신분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 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서(표준안)

(신규, 재 약정)

- 1.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 등
  - 지급대상 농지 : <별첨>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조서 및 청구서' 참조
  - 보조금 지급액
    - 총지급액 : 금 원(₩ )
    - 월지급액 : 금 원(₩ )
  - 보조금 지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 <u>영농</u> 은퇴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월])
  - \* 영농은퇴 기간은 약정자가 8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한다.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 2. 약 정 내 용

- 제1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갑"은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이 약정체결후 "을"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이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③ 보조금은 "을"이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2조(경작허용농지 경작 및 추가 이양) ① "을"은 이 약정 체결 시「별첨」'경영이양보조금 지급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에 따라 "갑"이 계속 경작을 허용한 소유농지 중 3천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포함) 및 개별법에 따른 개발 예정지역 내의 농지이외에는 영농은퇴 기간 동안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과 지급약정 체결 시 계속 경작을 허용한 농지 중 3천 제곱미터 이하(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원부 미등재 농

- 지 포함)의 농지에 한하여 "을"이 추가로 경영이양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연령에 따른 잔여 지급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다만, 이 약정 체결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을"은 이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제5조제3호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약정의 해지·해제)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2. "을"이 <u>보조금 지급 약정체결 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u> 농지를 포함)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3. "을"이 경영이양 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차(임대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이 해지된 경우
  - 4. "을"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5. "을"이 보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 6. "을"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 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기타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조치 할 수 있다.
    - 1. "을"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을 매도로 경영이양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2. "을"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 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3. "을"이 보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배우자가 이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상속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며, 상속 완료시 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함. 또한 임대이양약정 농지가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4. 임대이양 약정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전용, 농지 일부 소유권 변경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 계속 유지되는 경우(감소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함)
- 5.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거나 약정기간 이상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 ③ "을"이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확인(자체심의)한 후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제·해 지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약정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을"은 이미 수령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5년,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3년간,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2.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이미 수령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3. "을"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이 경우 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다.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한다.
- 제5조(통지의무) "을"은 제1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렁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주소의 변경

- 2. 제1조제3항에 따른 본인의 보조금 지급 예금계좌번호의 변동
- 3. 제2조제3항에 따른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 4.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제6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② "을"이 제5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이 제1항에 따라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갑"이 "을"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 제7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 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당해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 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 제9조(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약정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임대기간에 대한 특약) 임대(임대위탁)기간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6조 [별표]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지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임대기간 20 년 월 일이 종료되기 전에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기한(20 년 월 일) 이후까지로 임대(임대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임대(임대위탁)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 제11조(지급약정 중도해지자 등의 사후조치) "을"은 "갑"과 체결한 지급약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중도에 지급약정을 해지하였을 경우에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제12조(출생연월일 정정) ①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며, 보조금 지급기간 종료시점을 재 산정하여 약정을 변경한다

"을"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 첨 :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년 월 일

"갑" 한국농어촌공사 지 사 장 (인)

"을"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 1. 지급대상자

경영이양자	성	명	생	년월일	밀(성별)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경영이상자 [ (배우자)		<b>(1)</b>	년	월	일 ( )	(1)	년	월	일 ( )	
	주	소								

#### 2. 경영이양농지 및 보조금 약정내역

농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m²)	지급단가 (원/m²)	보조 <sup>·</sup> 월액	금약정액 (원) 총액	지급기간 임대기간	이 양 방 법 (매매, 임대, 임대위탁)
계								

#### 3. 경작 허용 농지 현황

	유형별	농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경작	·여부	경작자	비고
	표 영 필	중시소세시	시민	시학	(m²)	자경	임대	경역시r 	(임대기간)
1-1	계속경작농지								
1-2	개인간 임대								
1-3	농지원부 미등재								
2.	개발예정지역								
3	공사임대								
4	신규 취득후 임대								
계		필지							
※계속 경작허용 규모 (3,000㎡)				m²(논	,	, 밭	, 3	<b>가</b> 수원	)

<sup>\*</sup> 허용 유형 : 1. 경작허용규모 (1-1. 계속경작 농지, 1-2. 개인간 임대농지, 1-3.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2. 개발예정 지역내 농지, 3. 공사 임대농지, 4. 신규취득 후 임대농지

#### 4. 보조금 지급 청구

_ 예	금 주 :	, 계좌번호 :	(은행 :
- 11	<u>р</u> , .	, /119 62 .	(1-0.

<sup>\*</sup> 경작허용규모는 3천째 이하의 농지임(계속 경작농지, 개인간 임대농지, 농지원부 미등재농지)